



최신 교통뉴스

▶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연장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거하여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12월 31일 폐지되어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폐지 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분담금을 환급하였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환급기간이 당초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교통안전분담금환급이 연장되었다.

1. 환급 신청기간 : 2002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2 환급대상 및 내용

가. 2001.12.31 이전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법인 자가용 자동차 포함)

나. 2001.12.31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다. 1999.1.1 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화로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라. 2002.1.1 분담금 폐지 이후 지로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분담금을 납부한 자(납부액 전액 환급)

3 개인(법인)별 환급액

가. 운전면허소지자

최소 50원 ~ 최고 5,400원(2002.1.1 이후 면허갱신 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나.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

최소 400원 ~ 최고 19,200원(2002.1.1 이후 정기 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4 환급 신청방법

가.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청구

나. 전화(팩스)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번호) 연락처,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공단 시·도지부에 통보하여 신청

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bundam.rtsa.or.kr 또는 www.rtsa.or.kr에 접속한 후 환급대상자 본인의 신상자료 및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신청

※ 환급신청시 반드시 본인(법인)명의 계좌번호로 신청해야 함.

5. 환급신청 및 문의처(공단 각 시·도지부 총무과) bundam.rtsa.or.kr 또는 www.rtsa.or.kr

지역	주소	전화번호
본부	중구 신당동 171	(02) 2230-6114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11	(02) 3498-2201
부산	남구 대연동 580-8	(051) 624-9034~6
대구	남구 대명동 1579-4	(053) 651-0155
인천	연수구 옥련동 563-4	(032) 831-0260~3
경기	수원 권선동 1034-5	(031) 239-0055
강원	춘천 우두동 76-13	(033) 252-4075
충북	청원 남일 효천리 65	(043) 298-2137
충남	대전 중구 오류동 190	(042) 525-9430~3
전북	전주 완산 대성 421	(063) 282-9255
전남	광주 서구 쌍촌동 992	(062) 375-4366~9
경북	대구 북구 산격동 1445	(053) 955-0560~1
경남	타령역 앞 용동 32-2	(055) 276-0040~1

※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환급신청

하여기환급받은자는환급대상자에서제외됨.

나.2002.1.1이후 운전면허 신규취득 및 자가용자
동차신규등록자는환급대상아님.

다. 상기 환급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분담금에
대해서는환급청구권이 시효로소멸됨.

라. 분담금 환급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공단 본
부 및 각시·도지부어느곳이나가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충남 논산 - 천안 연계구간 통행요금 일
부조정**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유료도로관리권자와 통행요
금산정체계가 상이하여 최저요금제를 독립 적용하였
던 충남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를 경유하는 호남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대한 일방향 중간정산시스템을
변경하여 최저요금제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한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를 경유하는 호남고속도로 차량가운
데 천안-서울구간은 상·하행선 구분없이 주행거리
에 따른 요금만 받고 논산이남 구간은 종전처럼 최저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통행료 징수방식은 예
전과 동일하다.

별도로 실시되고 있는 배기가스 중간검사제를 4월 1
일부터 서울 인접 15개 시지역(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남양주, 광명, 시흥, 군포, 구리, 하남,
의왕, 과천)내 노후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승용차의 경우 비사업용은 출고된지 12년, 사업용
은 3년 이상된 차량이다. 또한 승합 및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은 7년, 사업용은 4년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매년 1차례 정기검사와 동시에 의무적으로 중간검사
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검사 대상은 연차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중간검사 안내문은 검사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교
통안전공단이 통보하며 검사는 실제 도로 운행시의
하중을 반영하는 부하검사 방법에 의해 교통안전공
단과 지정 검사사업장에서 실시되며, 일산화탄소(CO)
와 탄화수소(HC) 이외에 질소산화물(NOx)이 검사항목
에 새로 추가된다. 화물트럭은 엔진정격 최대회전수
및 최대출력 등에 대한 점검도 받게 된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 관
련 정비·점검을 받은 뒤 재검사기간(중간검사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적합 판정 차량이 성능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1차
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사 명령이 내려지
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사 수수료는 5.5t 이상 차량은 18,000원, 5.5t 미
만 차량은 26,000원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2006년 이후의 배출가스 감소
량은 약 9만 527t (경제적 효과 1조 6천 422억원)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 

구 간	도공구간 이용거리	통행 요금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천안→ 1,100 남논산 (풍세→천안) 500	6.7	현행	1,100	1,100	1,100	1,100	
		개선	300 △800	300 △800	300 △800	600 △500	600 △
1,100 ▶ 경기도 2003. 4월부터 차량 중간검사 반드시 실시 남논산 (풍세→목천) 3.5	3.5	현행	1,100	1,100	1,100	1,100	
		개선	200 △900	200 △900	200 △900	300 △800	300 △

지동차 배연 저감대책의 하나로 정기검사 시 이에